조선후기《璿源系譜紀略》改刊의 추이

洪 順 敏

머리말
1. 체제의 변화
2. 改刊 사유
맺음말

머 리 말

왕조체제를 갖추고 있던 조선사회에서 왕실은 하나의 가문이라는 사적인 성격과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왕실은 여늬 가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바 흔히 "璿源錄"으로 부르는 왕실 족보가 편찬된 것도 그러한 특별 대우의 하나였다. 선원록은 다른 가문들의 족보와는 달리 "국가의 족보"로 인식되었으며, 그 편찬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의 관리 역시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공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선원록의 편찬 사업은 조선 초기부터 이미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 사회, 사상, 정치의 여러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17세기 말엽, 곧 1681년(숙종 7, 辛酉)에 이르러 그 이후 지속되는 '조선후기적'인 틀을 갖추었다.[1]

그러한 조선후기 선원록류의 중추적인 책은 《선원계보기략》이다. 《선원계보기략》은 서로 관련있는 여러 왕실 관계 문서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은 1681년(숙종 7) 첫번째 것이 간행된 이래 1900년(광무 4)에 이르는 조선 후, 말기 약 220여년 동안 100여차례 이상 수정 보완되면서 改刊[重校補刊]되었다. 그 과정에서 《선원계보기략》의 체재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따라서 《선원계보기략》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의 체제 구성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선원계보기략》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개간된 것은 족보의 중간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개간의 사유는 대체적으로 왕 및 왕실 구성원들에 대한 전례에 관계된 것들이다. 그것은 각 시기 왕실 구성의 변화는 물론 왕권의 위상과 더 나아가서는 정치사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선원계보기략》을 기초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체제구성과 변화, 그리고 개

필자 : 성심여대 강사

(1) 1681년까지의 '선원록' 편찬의 추이에 대해서는 홍순민, 1990.12. 〈조선후기 王室의 구성과 璿源錄—1681년(숙종 7)《璿源系譜紀略》의 편찬을 중심으로—〉《한국문화》 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와 홍순민, 1990.11. 〈조선후기 '선원록'의 편찬과 군주관〉《조선후기 사상계의 동향》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학술회의 발표요지를 참조. 이 글은 위 논문의 후속 작업으로서 위 발표문의 일부를 보완하여 쓰는 것이다.

간 事由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썼다. 그 결과 《선원계보기략》이 갖는 정치사적 함의를 규명하는 쪽보다는 지금까지 거의 방치되어 있던 자료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러한 작업 성과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왕권과 이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체제의 변화

1681년(숙종 7년, 辛酉) 첫 번 째 것이 간행된 이래 《선원계보기략》은 1900년(광무 4, 庚子) 5월에 이르기까지 220년 동안 총 104회 개간되었다.(2) 이렇게 여러 차례 거듭 刊行되는 동안 그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체제구성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숙종 초년 《선원계보기략》이 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까지의 왕실 관계 문서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책으로 《璿源錄》이 있다. 《선원계보기략》은 이 《선원록》을 저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선원계보기략》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먼저 《선원록》(규 8785, 8787)의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釐正璿源錄序 : 李敏敍
> 進璿源錄箋 : 金壽興, 朗善君 俁, 昌城君 佖, 李翊相, 李敏敍
> 璿源錄凡例 (21則)
> 目錄(50권) : 太祖大王 一男 鎭安大君~顯宗大王 三女 明安公主 海昌尉 吳泰周
> 奉敎釐正璿源錄官員職名 : 都提調 金壽興
> 奉敎校正璿源錄官員職名 :
> 釐正廳設局期間 : 1680(숙종 6 경신) 1.12~동년 10.25
> 校正廳設局期間 : 1680(숙종 6 경신) 11.9~1681.8.3
> 璿源錄

서문에서 해당 관서의 설국기간까지는 모두 합하여 한 책 분량으로 본 선원록을 간행하는 데 관련되는 부수적인 사항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부분은 물론 〈선원록〉이다. 그것은 50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태조부터 현종에 이르는 왕실 후손의 족보이다. 그 수록 대상은 왕실 本宗과 함께 外派까지 포괄한다. 구본, 즉 당시까지 전해지던 '선원록'에서는 본종과 외파를 구별하여 본종은 宗親錄, 외파는 類附錄을 별도로 만들었으나 이 선원록에서는 본종과 외파를 합하여 한 책에 포괄하였다. 그러나 양자를 전혀 아무런 구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중심을 이루는 앞 부분에는 본종과 외파를 구별하지 않고 한 면을 6단으로 나누어 왕을 기준으로 하여 여섯 대의 후손을 수록하였지만, 본종은 각 종파의

(2) 〈부표〉 '《선원계보기략》 重校補刊 연표' 참조. 이 글에서 앞으로 조선후기 《선원계보기략》 편찬의 추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 연표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이 연표는 《선원계보기략》의 總敍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104회란 수자는 수정 간행, 곧 重校補刊된 회수를 말하며, 실제로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간행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약 120여 회에 달한다.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삼대를 더 실었다. 각 종파를 싣는 순서는 대군—공주—왕자—옹주의 순서를 취함으로써 전래의 先男後女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여기에다 嫡庶之別의 원칙을 덧붙여 적용하였다.[3] 이 《선원록》은 이후 조선 후기에 줄곧 작성되는 여러 왕실 관계 문서들의 원본과 같은 구실을 하는 책이다.

위 《선원록》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수록 대상자를 간추리고, 기타 관계되는 책자들을 한 데 묶어 편찬한 것이 숙종 7년의 《선원보략》〔《선원계보기략》〕(규 8756, 8757)이다. 이 책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凡例(9則)
璿源先系 : 시조 신라 司空公 李翰~17세 李陽茂
列聖繼序之圖 : (제18세)穆祖~今上殿下(肅宗)
璿源世系 : 穆祖~肅宗(繼妃 閔氏)
璿源系譜紀略 : 상권=中宗~仁祖, 하권=仁祖~肅宗
跋 : 金錫胄

〈선원선계〉는 전주 이씨의 시조로부터 제17세 이양무까지 왕실의 직계 조상에 대한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은 것이며, 〈선원세계〉는 〈선원선계〉에 이어지는 제18세 목조로부터 숙종까지의 조선 왕실의 선대 왕들에 관한 인적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적은 책이다. 이것들은 원래는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이 때에 이르러 《선원계보기략》의 한 편목으로 흡수된 것이다. 〈열성계서지도〉는 왕위가 형에서 동생으로 이어져 昭穆 관계에 혼란이 있는 경우를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목조로부터 숙종까지의 계서 관계를 한 장의 표로 만든 것이다. 〈선원계보기략〉은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왕실 자손의 족보이다. 전체 한 책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의 상권은 중종에서 인조까지, 하권은 인조에서 숙종까지 왕실과 그 후예의 족보를 싣고 있다. 한면이 5단으로 나뉘어 왕의 5대손을 수록 대상으로 하였다. 〈열성계서지도〉나 〈선원선계〉에서 목조부터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도 목조 자손부터 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中宗부터 싣고 있다. 그 이유를 이 책의 범례에서는 세대가 멀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쉽게 다 쓸 수 없으며, 또 중종이 숙종 당시 대왕대비〔仁祖繼妃 莊烈王后〕의 高祖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그 직전에 만들어진 《선원록》은 태조 자손부터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또 중종이 대왕대비의 고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종조의 宗支는 四世 受爵者에 한하고 外孫은 일세에 한하여 수록하는 데 비해 선조 자손의 경우에는 숙종의 근친이므로 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가지로 수록하였다.[4] 이는 《선원록》과 비교하여 보면

(3) 《선원록》 규 8785 범례 참조
(4) 《선원계보기략》 (규 8756, 8757) 〈범례〉
一 中宗朝宗支則限四世受爵者 外孫則限一世收錄 以見內外輕重之別 若宣廟子孫 則實爲當宁近親 毋論內外 一例備錄 并詳於婚娶爵秩云
《선원계보기략》 (규 8640) 범례

앞 시기 왕들의 자손은 수록 대상의 범위가 크게 준 것인데 이는 숙종 당대 왕실과 혈연관계가 먼 전주 이씨들을 구태여 찾아 적어 넣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제외하고, 조선 후기 王系의 실질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선조부터 그 자손들을 포괄하려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숙종 7년판 《선원계보기략》은 《선원록》을 바탕으로 그것을 축약하여 필요한 범위의 왕실 자손을 수록하여 간행된 것으로서, 이후 같은 이름으로 계속 간행되는 《선원계보기략》의 첫번째 책이다. 이렇게 정해진 《선원계보기략》의 체제는 1760년(영조 36)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숙종 연간에는 그 이후 네 차례 더 개간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늘어나는 후손들을 상세히 찾아 기재하고 원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정도 외에는 체제상의 변동은 없었다.[5]

경종대와 영조 전반기에는 그 때 그 때의 사유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 외에 체제상의 변동이 없이 개간되었다. 그러다가 영조 36년에 이르러 체제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1면을 5단으로 나누던 것을 6단으로 나눈 것이었으나, 이 경우는 맨 윗단에 역대 왕의 묘호를 쓰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5단 체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실제적인 변화의 내용은 姓孫은 이전대로 5대를 싣되 外孫은 3대로 줄인 것이다.[6] 이 때까지는 《선원계보기략》을 개간할 때마다 발문을 추가하여 발문이 매우 많아졌으며, 달라진 내용을 범례에 표기함으로써 범례 항목도 매우 많아졌다. 그리하여 영조 40년에는 발문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아주 중대한 것 이외에는 범례를 덧붙여 적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식화하였다.[7] 영조 연간에는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이 매우 잦아져,[8] 개간할 때마다 일일이 발문과 범례를 지어 붙이기가 매우 번거로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조대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을 주도한 것은 영조 자신이었던 바, 왕이 하는 일에 신하들의 발문을 다는 것이 학문에 있어서도 신하들을 능가한다고 자부하던 영조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도 발문과 범례를 추가

是書編於肅宗己未 當時掌故闕略 考据甚艱 故太祖朝至成宗朝 皆闕子孫譜 唯中宗朝 姓孫限四世 外孫限一世 至於宣祖朝 姓孫限十世 外孫限七世 皆爲之譜

(5) 《선원계보기략》(규 8645) 總敍
(숙종) 二十六年庚辰夏六月 命設校正廳于宗簿寺 如辛酉例 重校補刊 以東善都正炳等 進璿源紀略續篇 詳錄原編後 支裔之蕃衍 且釐正原編之訛誤也 四十五年己亥秋七月 重校補刊 … 每一校正 其內外支孫之未及書者 一體校正以爲例
《숙종실록》 권34상, 26년 정월 기해
宗臣東善都正炳益寧守梯等上疏 進璿源系譜紀略續册子 上下該官 更加校正錄補 又命吏曹考例 炳及梯並加資

(6) 《선원계보기략》(규 8645) 總敍
(영조) 三十六年庚辰夏四月 子孫譜重校補刊 以姓孫限五代 外孫限三代 及畫爲六層等 凡例悉加更定也 詳見新定凡例

(7) 《선원계보기략》(규 8645) 총서
(영조) 四十年甲申春二月 重校補刊 … 敎曰 譜略跋文旣命勿製 今覽凡例支繁 亦若跋文 此後關係莫重者外 勿復疊錄 以爲定式

(8) 이 글 제 2 장 〈표 2〉 《璿源系譜紀略》의 改刊 빈도 참조.

하지 말도록 조처하게된 까닭이 되었을 것이다.

《선원계보기략》의 체제에 좀 더 커다란 변화는 1783년(정조 7) 본(규 8640, 8661)에서 나타난다. 이 본에는 정조가 친히 쓴 서문이 실리게 되었고 이것은 그 이후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다.[9] 또 범례는 10칙으로 고정하여 책의 체제에 관계되는 내용을 싣도록 하고, 대신 總敍를 만들어 개정할 때마다 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10] 또 그 전에는 별도로 작성하던 팔고조도를 이때부터는 《선원계보기략》에 함께 실어, 그 체제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總敍
凡例(10則)
先系
繼序圖
世系
八高祖圖
子孫錄

자손록에 수록하는 자손의 범위는 姓孫은 5대로서 그 이전과 같지만, 외손은 선조조 이상은 2대, 이하는 3대로 한정하여 선조조 이상은 다시 1대를 더 줄였다. 그 밖에 世系에는 왕의 徽號, 이름, 字, 간략한 행적, 왕이나 왕비, 왕자, 공주 등이 태어난 궁전 이름, 즉위 연월일, 나이, 陵 이름, 玉册을 追上한 것, 影幀을 奉安한 것을 기재하는 외에 寶鑑을 지어바친 것, 世室로 정한 것 등의 내용을 덧붙여 싣게 되었다.[11]

이러한 변화는 요약하면 다루는 대상의 범위는 줄어든 대신 각 인물에 관한 내용은 늘어난 것이다. 수록 대상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숙종 이후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조가 직접 지은 서문이 고정적으로 실리게 된 것은 《선원계보기략》 간행의 주도권을 왕이 장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조대에는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이 영조대나 정조 이후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졌다.[12]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왕권이 강하다는 것은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사유로써 자주 개간을 하는 것은 왕권이 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 연간에는 개간 빈도가 낮기는 하였으나 그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다. 정조 연간에 이러한 체제

(9) 《선원계보기략》 (규 8640) 총서
先是璿譜始刊時 有司請序及跋 廟廟先命大提學製跋者 聖意有在 偶未遑也 於是自上親製序文 弁于卷首 以正一書之規摹 以成廟廟之志事也

(10) 《선원계보기략》 (규 8640) 총서
先是璿譜每一補刊 輒有凡例 多至三十六編 此乃中間有司奉行之失其宜 故英廟嘗欲釐正 而未遑焉 於是命舊本凡例一切刪去 改撰凡例與總敍 俾書法考之於凡例 補刊考之於總敍 以正一書之體段 以成英廟之志事也

(11) 《선원계보기략》 (규 8640) 총서
定世室上寶鑑 揄揚之大 而特命該載者 及厥文也 … 舊本以中宗傳位 仁宗受禪載錄 而今考寶鑑 悉加更定者 遵信史也 … 加上尊號於王大妃殿景慕宮惠慶宮 大書追載者 答庶慶也 … 其他名例多所釐正

(12) 이 책 제 2 장 〈표 2〉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빈도 참조.

를 갖춤으로써 숙종 초년 《선원계보기략》이 처음 만들어진지 100여 년 만에 《선원계보기략》은 〈선계록〉, 〈세계〉, 〈보첩〉, 〈팔고조도〉를 아우르는, 왕실의 구성에 관한 종합정리서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13] 이러한 체제는 그 이후 광무 연간까지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2. 改刊 사유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간 사유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변경할 목적으로 《선원계보기략》을 개간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원계보기략》 개간 사유의 대상 인물을 분류하고자 할 때 우선 개간되는 왕 當代의 인물인가, 前代의 인물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대의 인물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목적으로 개간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과거의 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당대의 인물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현실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실제 개간 사유를 살펴 보더라도 당대의 인물에 관한 것과 전대의 인물에 관한 것은 많은 부분 중복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점에서는 두 부류가 뚜렷이 구분되기도 한다.

다음 개간 대상 인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인물의 정치적 비중이다.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인물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개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인물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개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인물의 정치적 비중이란 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간단히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 인물의 정치적 비중은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역으로 우리는 어느 시기에 어느 인물이 《선원계보기략》 개간 사유의 대상으로 부각되는가를 보고 그 인물의 정치적 비중을 가늠할 수도 있다. 측정하기 미묘한 정치적 비중을 개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잠정적 기준은 결국 국왕과의 관계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왕 그 자신과 왕비, 왕실 내에서 국왕보다 윗 세대 인물, 아래 세대 인물, 전대의 국왕, 국왕 및 왕비에 버금가는 인물, 당대 왕의 생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선원계보기략》 개간 사유를 검토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원계보기략》 개간 사유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을 분류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당대의 인물
   1) 국왕과 왕비
   2) 국왕의 윗 세대
   3) 국왕의 아래 세대

(13) 《선원계보기략》 (규 8640) 총서
(정조 7년) 蓋自肅廟己未至于今 百有餘年之後 紀略始成完本

2. 전대의 인물
   1) 전왕과 왕비
   2) 왕에 버금가는 인물
   3) 왕의 생모

개간 사유의 대상 인물이 달라지는 데 따라 개간의 구체적 내용도 어느 정도 달라진다. 직전 왕과 당대 왕에 관련된 개간 사유는 주로 전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는 데 따르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는 전 왕의 廟號, 諡號, 陵號, 殿號와 새 왕의 즉위 일자, 宮號, 門名 등과 새 왕비의 誕降, 册封 일자 등을 기재한다. 왕의 교체에 따르는 이러한 개간은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당대 왕에 관한 그 밖의 개간 사유로는 尊號를 올리는 것, 御眞을 봉안하는 것, 왕이 耆老所에 드는 것과 같은 특별한 예우를 받은 것 등이 있으며, 왕비에 관한 것으로는 존호를 올리는 것과 왕비가 승하한 경우 시호, 릉호, 휘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있다.

어느 한 시점에서 국왕의 윗 세대로서 생존하고 있는 왕의 할머니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그 급에 따라 大王大妃—王大妃—大妃로 불리며 크게 높힘을 받는다. 대왕대비나 왕대비는 정치적으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왕권의 위상이 낮아지고 外戚이라든가 山林, 관료, 武班的 성격을 갖는 몇몇 가문들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이들은 그러한 가문이 핵심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는 데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그들에 관한 의전이 자주 이루어졌다. 이들에 관한 의전으로서 《선원계보기략》 개간 사유가 되었던 것은 왕비에서 왕대비로, 왕대비에서 대왕대비로 進號하는 일과 가장 많은 경우로서 존호를 올리는 일이었다.

국왕의 아래 세대로서 가장 비중이 큰 대상은 王世子이다. 왕세자로 책봉됨에 따라 入學, 冠禮, 책봉 등 그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는 것이다. 아울러 世子嬪에 관한 탄강, 책봉 일자 등도 함께 기재된다. 왕세자에 버금가는 대상으로서 王世弟라든가 元子, 王世孫, 元孫 등 왕위 계승 후보자 들에 관한 내용 역시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주요 사유가 되었다.

어느 시기 당대의 인물들에 관한 내용이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주된 사유가 됨은 사실이나, 외형상으로는 전대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으며, 그 중에는 개간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수 있다. 우선 관행적인 것으로 어느 왕이 승하하였을 때 그의 묘호, 시호, 릉호 등이 새로 정해져 《선원계보기략》에 기재되었다. 이러한 관행적인 것과는 달리 더 앞선 시기의 왕들〔列聖, 列朝〕에 관한 내용들도 수시로 변경되면서 《선원계보기략》에 기재되었다. 열조에 관한 내용은 때로는 일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왕에 관한 기록이 선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 사유 또한 매우 다양하여 登第일자, 在位·入學 年紀, 昇遐 殿名, 徽號·尊號,

御眞이나, 睟容 봉안, 보감을 지은 시기〔編上寶鑑年紀〕 등을 수정하거나 새로 기재하는 것 등이다. 전대의 왕비에 관해서는 책봉 일자, 탄강, 春秋, 승하 시기 등을 수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전대의 왕이나 왕비에 관해 수정, 보완하는 내용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정치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대의 왕이나 왕비보다는 왕세자로 죽어 후에 追尊된 인물들에 관한 내용이 정치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갖는다. 이 경우에도 개간 당시로 보아서 이미 오래 전에 추존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대의 왕이나 다름없이 취급되지만, 개간 당대의 왕과 관계가 있어서 추존된 인물의 경우에는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수정, 보완 내용은 대체로 그들의 묘호, 시호를 새로 정한 것, 존호를 올린 것, 묘를 이장하고 그 격을 높힌 것, 자손들을 찾아서 족보에 올린 것, 수용을 이봉한 것, 보감을 지어 올린 것 등이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당대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인물들이 왕비가 아닌 왕의 生母들이다. 18세기 경종 이후 조선 왕들은 하나같이 왕비가 아닌 왕의 후궁이거나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왕세자의 빈 소생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정치적 正統性에 크든 작든 흠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모에 대하여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조치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몇가지가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사유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한 사유는 그러나 다양하지는 않아서, 謚號, 院號, 尊號, 徽號 등을 지어 올리는 정도였다.

이상에서 분류한 대상 인물의 분류를 기준으로 각 왕대별 개간 사유의 대상 인원을 조사하여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개간 사유의 대상 인원

	숙 종	경 종	영 조	정 조	순 조	헌 종	철 종	고 종	계
1.1) 현왕과 왕비	2	2	3	2	2	3	2	2	18
1.2) 현왕 윗세대		1	2	1	2	1	3	3	13
1.3) 현왕 아래세대		2	6	2	3		1	3	17
2.1) 전왕과 왕비	5	3	17	3	11	2	3	46	90
2.2) 왕 버금 인물				3		1	2	6(35)	12
2.3) 왕의 생모			2	2	2	1	2	1	10
계	7	8	30	13	20	8	13	61(35)	160

* 고종대 (35)는 왕이 아닌 왕실 조상들을 가리킴.

인물 분류상으로는 전왕과 왕비가 90명으로서 전체 160명의 56%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현 왕과 왕비, 왕 아래 세대가 차지하며, 왕의 윗세대와 왕에 버금가는 인물 그리고 왕의 생모 등은 적은 편이다. 어느 왕 당대에 생존하는 그 왕의 윗 세대나 아래 세대, 그리고 왕에 버금가는 인물과 왕의 생모 등은 그 대상 인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내

용이 적게 나타나고 전왕과 왕비는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정치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왕대별로는 고종대가 61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종대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은 그 이전 시기와는 판이한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와 같은 선상에서 대비하는 것은 무리이다. 고종대에는 19세기 전반 철종때까지의 흐름 위에 大韓帝國을 세우고 稱帝 建元하는 시대적 상황이 덧보태어져 여러 尊崇 조치가 남발되며 그에 따라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이 매우 자주 이루어진 것이다. 고종대 다음으로 대상 인원수가 많은 때는 영조대이며 그 다음은 순조대이다. 각 왕대별 개간 사유의 대상 인원수는 《선원계보기략》 편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편찬의 전모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회수와 빈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숙종 초년에서 1900년(광무 4)까지 약 220년 동안 선원계보기략은 104회 개간되었으며, 간행되지는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수정 회수는 약 120회에 달한다. 각 왕대별로 개간회수와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앞의 〈표 1〉과 〈표 2〉를 연결시켜 보면 조선후기 《선원계보기략》의 편찬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왕대별 개간의 추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표 2〉 《璿源系譜紀略》의 改刊 빈도

	숙 종	경 종	영 조	정 조	순 조	헌 종	철 종	고 종	비 고
재 위 기 간(月)	496	50	619	291	412	175	174	437	
改 刊 回 數(回)	5	1	28	9	24	7	14	26	
평 균 기 간(月)	99	50	22	32	17	25	12	17	
빈 도 순 위	8	7	4	6	2	5	1	2	

* 재위 기간은 윤달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숙종 연간에는 처음 《선원계보기략》을 간행하면서 열성 일반의 승하 전명과 휘호, 여러 왕후들이 탄강, 승하 전명, 恭定大王의 등제 일자, 桓祖의 승하연월, 효종의 軒號 등을 비롯하여 이전 선원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많다. 구체적인 경우로는 숙종 27년 仁顯왕후가 죽음에 따라 그 시호를 추가로 기재한 것, 숙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존호를 기재한 것, 숙종 45년 숙종이 60세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간 것 등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종 연간에 《선원계보기략》은 전부 합하여 5회 개간되었다. 이 수치는 총 회수 면에서는 물론 빈도의 면에서도 숙종 이후 여덟 왕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개간 사유가 되는 대상 인물도 구체적인 경우는 6명에 지나지 않는다.(14) 숙종 연간은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관행으로 굳어지지는 않

(14) 1. 1) 2 : 肅宗, 仁顯王后
2. 1) 5 : 恭定大王, 昭憲王后, 桓祖大王, 孝宗

은, 시작 단계라고 하겠다.

경종은 환국의 와중에서 왕이 되어 미처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해보기도 전인 즉위 4년만에 죽었다. 그 결과 경종대에는 《선원계보기략》은 단 1회 개간되었을 뿐이다. 그 사유도 관례에 따라 숙종에서 경종으로 왕이 교체된 데 따른 여러사항의 변동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간 사유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8명에 지나지 않는다.[15] 그나마 다른 왕대에는 대개 새 왕의 즉위 직후에 《선원계보기략》이 개간되는 데 비하여 경종대에는 경종 3년에 가서야 개간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경종대는 숙종대에 시작된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사업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채 정착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영조대에는 재위 52년(691개월) 동안 28회 개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숙종 이후 여덟 왕대 가운데 네번째로 많은 것이다. 영조 연간에 이르러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간의 사유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개간 사유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수가 30명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내단히 늘었고,[16] 숙종대에 비해서는 물론, 다음 왕인 정조대에 비해서도 존호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의례적인 조치들을 매우 자주 행하였다. 예를 들면 영조 당대의 대왕대비는 숙종의 제 2 계비 仁元王后였는데 그에 대한 존호를 열 차례나 올렸다. 當宇, 곧 어느 시기 재위하고 있는 왕에게 존호를 올리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인데,[17] 영조 연간에는 이런 사례가 다섯 차례나 되며, 존호의 표현도 화려하기 그지없는 것이다.[18] 또 자신의 생모에 대해서 墓의 격을 높히고 시호와 존호를 올린 것도 영조가 처음 시작한 일이다. 영조대에는 왕이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蕩平策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과 짝하여 영조는 왕권의 위상을 높히려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이 자주 이루어졌으며 그 사유 또한 특별한 것이 많았던 것이다.

---

(15) 1. 1) 2 : 景宗, 王妃
　1. 2) 1 : 東朝(仁元王后)
　1. 3) 2 : 王世弟(英祖), 世弟嬪
　2. 1) 3 : 肅宗, 仁敬王后, 仁顯王后
(16) 1. 1) 3 : 英祖, 貞聖王后, 貞純王后
　1. 2) 2 : 대왕대비(仁元王后), 왕대비(宣懿王后)
　1. 3) 6 : 왕세자(孝章世子 ; 眞宗), 세자빈, 왕세자(思悼世子), 세자빈, 왕세손(정조), 세손빈
　2. 1) 17 : 列朝, 景宗, 端懿王后, 端敬王后, 효종, 숙종, 仁敬王后, 仁顯王后, 世祖, 元宗, 昭惠王后, 睿宗, 安順王后, 貞顯王后, 仁聖王后, 先司空公(始祖), 明聖王后
　2. 3) 2 : 毓祥宮(영조 생모), 儲慶宮(원종 생모)
(17) 순조 1회, 철종 1회, 고종 5회
(18) 16년 경신 8월 상존호—至行純德英謨毅烈
　28년 임신 가상존호—章義弘倫光仁敦禧
　32년 병자 정월 가상존호—體天建極聖功神化
　48년 임진 11월 가상존호—大成廣運開泰基永
　52년 병자 2월 가상존호—堯明舜哲乾健坤寧
　정종 8년 갑진 추상존호—配命垂統景曆洪休
　고종 27년 경인 1월 추상존호—翼文宣武溫敬顯孝

정조대에는 영조대에 비해서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와 함께 그 대상 인물도 크게 줄었다.[19] 대상 인물의 변화 가운데 특히 왕의 아래 세대 인물들이나 전대 왕과 왕비에 대한 기록이 크게 준 반면 자신의 생부인 景慕宮〔思悼世子〕에 대해 묘를 이장하고 원호와 시호, 존호를 올린 것, 그리고 생모인 惠景宮을 進號하고 존호를 올린 것 등이 눈에 띈다. 이는 할아버지이자 전왕인 영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생부 사도세자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정조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강화로 연결되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조대의 개간의 사유는 비교적 현실적이고 합리성이 강한 것들이다. 정조는 영조처럼 자신의 존호는 짓는다거나 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조는 《선원계보기략》의 서문을 자신이 직접 쓰는 등 실질적으로 《선원계보기략》 편찬의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정조대는 왕의 입장에서는 《선원계보기략》 편찬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순조대는 개간 빈도에서 철종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대상 인물의 수도 20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20] 그러나 현실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오래전 인물들에 대한 의례적 내용이 많다. 순조대 개간의 특징은 한번 개간하면서 수정한 내용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순조대는 들어서면서 정조대의 신중한 분위기에서 개간을 남발하는 분위기로 선회하였다. 이는 순조대에 들어와 영, 정조대의 탕평책이 퇴색하고 몇몇 가문으로 정치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왕권의 위상이 낮아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왕권은 실질적으로는 약해진 채 그에 대한 왕실측의 위기의식과 당시 권력을 장악한 집단의 호도책이 결합하여 《선원계보기략》이 자주 개간된 것이다.

헌종대에는 다시 그 재위 간에 비하여 개간 회수가 크게 줄어서 빈도에서 영조대보다도 낮은 5위이다. 개간 사유의 대상 인물도 8명에 지나지 않는다.[21]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

(19) 1. 1) 2 : 當宇(정조), 왕비(정조비)
1. 2) 1 : 왕대비(정순왕후)
1. 3) 2 : 왕세자(文孝世子), 王元子(純祖)
2. 1) 3 : 영조, 정성왕후, 宣祖
2. 2) 3 : 眞宗, 孝純王后, 景慕宮(思悼世子)
2. 3) 2 : 惠敬宮(정조 생모), 延祐宮(진종 생모)

(20) 1. 1) 2 : 純祖, 純元王后
1. 2) 2 : 貞純王后(대왕대비), 孝懿王后(왕대비)
1. 3) 3 : 왕세자(孝明世子 ; 翼宗), 세자빈, 王元孫(憲宗)
2. 1) 11 : 正祖, 桓祖, 懿惠王后, 顯德王后, 章順王后, 端懿王后, 端宗, 世祖, 睿宗, 仁祖, 孝懿王后
2. 3) 2 : 獻敬惠嬪(惠敬宮), 顯穆綏嬪(綏嬪 朴氏)

(21) 1. 1) 3 : 憲宗, 孝顯王后, 왕비(明憲王后)
1. 2) 1 : 대왕대비(純元王后), [왕대비(翼宗妃 ; 神貞王后)]
2. 1) 2 : 純祖, 正祖
2. 2) 1 : 翼宗
2. 3) 1 : 익종비(신정왕후)

람이외에는 굳이 개간의 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헌종대 개간 사유의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헌종의 생부인 翼宗(孝明世子)이다. 헌종이 즉위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존하고 능호와 시호, 묘호, 존호를 올렸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볼 때 헌종대에는 다시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을 신중히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철종대에는 헌종대의 분위기에서 다시 반전하여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이 매우 자주 이루어져 빈도에서 1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상 인물은 그리 많지 않으며,[22] 개간 사유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 주로 존호를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철종대 가장 여러 번 존호가 올려진 사람은 당시 대왕대비, 곧 순조비 순원왕후로서 6회이고, 그 다음이 순조로 5회이다. 철종이 순원왕후에 의해 영입되어 순조의 後嗣로 정해짐으로써,[23] 철종 왕권의 정통성의 기반이 되는 순조와 대왕대비 〔순원왕후〕에 대한 의전적 조치가 자주 이루어진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 왕권의 위상은 크게 낮아졌다.[24] 그 가운데 특히 철종의 왕권은 18, 19세기 여덟 왕들 가운데 가장 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종대에 《선원계보기략》이 가장 자주 개간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왕권의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왕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된 것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종대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양상은 철종대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선 대상 인원수에서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늘었다. 총 개간 회수는 영조대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빈도 역시 철종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개간의 구체적 사유를 보아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대단히 복잡하다. 고종 연간에는 〈부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년에 철종에서 고종으로 왕이 교체된 데 따라 한 차례 개간한 이후 고종 9년 2월에 가서야 두 번째 개간이 이루어진다. 그 사이에 존호를 올린다거나, 陵墓의 격을 높이는 등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계보기략》을 개간하지 않은 것은 각별히 눈여겨 보아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 기간은 興宣大院君 집권기이다. 흔히 말하듯이 대원군은 19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낮아질대로 낮아진 왕권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선원계보기략》을 거의 개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대원군으로 하여금 쉽게 《선원계보기략》을 개간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유도 있겠으나, 당시에 《선원계보기략》 개간이

(22) 1. 1) 2 : 哲宗, 明純王后
1. 2) 3 : 대왕대비(純元王后), 왕대비(대왕대비로 진호, 神貞王后), 왕비(대비로 진호, 明憲王后)
1. 3) 1 : 王元子(早卒)
2. 1) 3 : 憲宗, 純祖, 孝顯王后
2. 2) 2 : 翼宗, 莊憲世子(思悼世子)
2. 3) 2 : 獻敬惠嬪(惠敬宮), 顯穆綏嬪(綏嬪 朴氏)

(23) 이태진 · 홍순민, 1990 〈《日省錄》 刀削의 실상과 경위〉 《한국문화》 1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홍순민, 1990 〈정치집단의 성격〉 《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24) 오수창, 1990 〈권력집단과 정국 운영〉 《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갖는 의미가 이미 왕권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원군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뒤 고종 연간의 정치 상황은 그 이전의 이른바 "세도정치"기와는 또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제는 조선 국내의 여러 정치세력 사이의 역학관계 외에 帝國主義 세력이 끼어 들어 왕권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고종대의《선원계보기략》개간에는 이러한 근본적 위협에 대한 왕권측의 대응이 반영되어 있다. 그 방향은 대체로 태조를 비롯한 이전 여러 왕들에 대한 존숭 조치를 광범위하게 취하는 쪽이었다. 그 결과 대상 인원과 빈도가 커졌고 그 존숭 조치의 내용도 복잡해진 것이다. 더구나 대한제국을 세우고 칭제 건원하면서 그에 따라 그 이전 왕들에 대한 칭호 등도 격을 높인 경우가 많아《선원계보기략》의 내용은 더욱 복잡하게 수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선원계보기략》에 수록되는 왕실 자손의 범위도 바뀌고 또 冒錄되는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선원계보기략》의 성격 자체가 변질되어 19세기 말엽에는 왕실 구성원을 정리하여 수록하는 최소한의 기능마저 잃은채 日帝가 조선 왕실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권위를 깎아 내리는 데 악이용되었다.

맺 음 말

조선 왕조에서는 왕실에 관련된 문서들을 다수 만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책이《선원계보기략》이다.《선원계보기략》은 숙종 초년에서 광무 4년까지 약 220년 동안에 104회 개간되었다. 그 과정에서《선원계보기략》의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첫 번《선원계보기략》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되어 그것의 저본과 같은 역할을 한《선원록》은 주로 왕실 후손 족보라는 의미를 띠었으나,《선원계보기략》은〈선원선계〉,〈선원세계〉,〈열성계서지도〉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애초《선원록》은 수록 대상 범위가 성손은 9대 외손은 6대였으나《선원계보기략》에서는 성손 외손 모두 5대로 줄었다. 숙종 연간에는《선원계보기략》의 기본적 체제가 마련되는 단계였다. 숙종 연간에 마련된《선원계보기략》의 체제는 영조 36년 무렵까지 이어졌다. 영조 36년에 이르러 한 면을 5단에서 6단으로 늘여 맨 윗단에는 왕을 기재하였다. 수록 대상의 범위가 왕의 성손은 5대 그대로나 외손은 3대로 줄었다. 그 직후 영조 40년에는 개간할 때마다 발문을 추가로 지어 붙이고 수정된 내용을 범례 항목을 추가하여 밝히던 것을 발문을 추가하지 못하게 하고 범례 역시 아주 중대한 것 외에는 덧붙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정조 7년에 이르러《선원계보기략》체제에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정조가 친히 서문을 지어 책의 맨 앞에 붙이어 이것이 그대로 전승되었으며, 범례는 책의 체제에 관련된 것 10칙으로 고정하는 대신 매번 바뀌는 부분은 총서에서 드러내도록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새로〈팔고조도〉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로써《선원계보기략》은 그 이후 이어지는 체제를 확정하였고, 왕실 관계 문서의

중추적이고 종합적인 책으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였다.

《선원계보기략》이 여러 차례 개간되게 된 사유는 다양하다. 《선원계보기략》이 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확인하고 예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만큼 그것의 개간 사유는 개간을 하게된 주된 대상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 개간 사유의 대상 인물은 크게 개간 당시 생존하는 인물과 이미 죽은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존 인물은 다시 왕과의 관계에 따라 왕과 왕비, 대왕대비·왕대비·대비 등 왕의 윗 세대 인물, 왕세자를 비롯한 왕의 아래 세대 인물로 나뉘며, 전대의 인물은 전대의 왕과 왕비,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왕세자나 후에 왕으로 추존된 인물 등 왕에 버금가는 인물, 그리고 왕비가 아닌 현 왕의 생모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대상 인물의 분류에 따라 개간 사유도 어느 정도 서로 달라진다. 왕과 왕비는 새로 왕이 된 데 따르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존호를 올리거나 기로소에 든 사실을 기재하는 것 정도이다. 왕의 윗 세대 인물에 대한 내용은 주로 존호를 올린 것 등 의례적 예우가 대부분이며, 왕의 아래 세대에 관한 것 역시 왕세자나 원자로 책봉된 데 따르는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들이다. 전왕과 왕비에 관한 내용은 양으로는 가장 많으나 현실 정치적 의미는 약한, 의례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왕에 버금가는 인물들이나 현 왕의 생모에 관한 내용이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다. 이를테면 정조 당시 사도세자를 추숭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현 왕의 생부에 관한 예우를 넘어 정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7세기 후반 숙종 초년 이후 18세기 초엽 영조 초년 사이의 조선 정치사는 그 이전의 붕당정치의 균형이 깨지면서 붕당간의 급격한 교체 현상인 환국이 자주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국왕이 정국의 변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왕권의 기반은 허약하였다. 환국으로 인하여 정치집단의 역학관계에 따라 왕의 후사를 결정하는 일이 영향을 받을 정도였다. 영조, 정조대의 탕평정치는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왕권이 중심이 되어 안정시키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탕평정치기에는 정치권력이 국왕의 정치논리를 추종하는 고위 관료들이나 외척등 국왕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단으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왕권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과는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대의 이른바 "세도정치"는 소수 유력한 가문 출신의 인물들이 왕을 대신하여 이러한 권력 집중의 초점에 서게 되면서 나타난 정치 양상이다. 세도정치기에는 이들 권력집단이 실질적으로는 왕권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왕권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왕권의 권위를 높이는 조치를 남발하였다. 왕권의 의제적 권위는 물론 부정되지 않았으나 실질적 권한은 대단히 낮아져 있었다. "세도정치기"에 이어지는 고종대의 왕권의 위상은 그 앞시기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왕권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외세의 침탈로 인하여 왕권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

고 그 결과 그 위상은 극히 낮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추이는 이러한 조선후기 정치사의 흐름, 왕권의 위상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각 왕대별 왕권의 강약에 따라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빈도에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환국기인 숙종, 경종대에 《선원계보기략》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선원계보기략》이 본격적으로 자주 개간되지는 않았다. 탕평정치기인 영조, 정조대에 비로소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이 본격화하였다. 이 시기는 《선원계보기략》의 개간을 통해서 왕권의 권위를 높이려는 국왕측의 의도가 어느 정도 관철된 시기로 보인다. 세도정치기에는 탕평정치기보다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빈도가 한 층 높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왕권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왕권의 위상이 낮아지는 데 대한 왕실측의 위기 의식과 왕권을 능가하는 핵심 권력을 장악한 당시 권력집단의 위장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빈도가 높은 것이 반드시 왕권의 위상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선원계보기략》의 편찬이 본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오히려 왕권의 실질적 권한이 클 때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빈도는 낮아진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엄밀한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보자면 왕권의 위상과 《선원계보기략》의 편찬이 애초에는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편에서 왕권의 위상은 낮아지고 정치권력이 소수의 가문으로 집중되는 조선후기 정치사의 전개 과정에서 단지 의제적이고 형식적으로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당시 정치의 실상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에 《선원계보기략》이 여러 차례 개간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계보기략》이 개간되는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되는 문서들도 여러 가지가 다수 작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선원록의 수정이나 교정을 담당했던 宗簿寺를 비롯한 여러 관청의 업무일지라 할 수 있는 儀軌類와 선원록을 鼎足, 太白, 五臺, 赤裳 네 史庫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形止案類, 《선원계보기략》이 작성되기 전부터 삼년마다 거의 거르지 않고 작성되면서 《선원계보기략》에는 들지 않는 왕실과 거리가 멀어진 종실들을 찾아 수록한 加現錄 등을 꼽을 수 있다.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원계보기략》 자체의 내용 분석과 함께 이러한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원계보기략》 개간의 주체, 반포의 대상, 왕실 구성의 내용과 그 변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으므로 후일 별도의 작업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부표〉《璿源系譜紀略》重校補刊 연표

총번	일　　시	교　정　내　용	규장각 No.	비 고
	1679, 肅宗 5 己未 2월	郎原君 偏이 《선원보략》 1권을 바침. 교정 명령		
	1680, 肅宗 6 庚申 1월	종부시에 교정청 설치하여 이정.	8785~8787	《선원록》
1	1681, 肅宗 7 辛酉 9월	《선원계보기략》진헌, 史庫에 分藏, 頒賜.	8756, 8757	
2	1700, 肅宗26 庚辰 6월	선원기략속편. 支裔를 詳錄. 원편의 訛誤 이정		
3	1702, 肅宗28 壬午 월	인현왕후 시호	8724, 8749	
4	1713, 肅宗39 癸巳윤5월	숙종 즉위 40년 기념 존호를 올림	8748	
5	1719, 肅宗45 己亥 7월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일		
6	1723, 景宗 3 癸卯 10월	숙종 사후 그 묘호 등. 인경, 인현 등 가상존호	2088	
7	1725, 英祖 1 乙巳 8월	경종 사후 그 묘호 등. 왕대비를 대왕대비로 진호		
8	1726, 英祖 2 丙午 월	대왕대비, 왕대비 존호, 단의왕후 휘호		
9	1727, 英祖 3 丁未 12월	왕세자 입학, 관례. 세자빈 탄강 등 관계사항		
10	1731, 英祖 7 辛亥 9월	새 장릉 지명, 단의왕후 시호	8649, 8747	
11	1735, 英祖11 乙卯 1월	원자 탄강 연월일. 列朝 휘호 바로잡음		
12	1736, 英祖12 丙辰 월	왕세자 책봉 연기	8737	
13	1739, 英祖15 己未 6월	단경왕후 휘호	8752, 8726	
14	1740, 英祖16 庚申 3월	대왕대비 가상존호	8751	
15	1740, 英祖16 庚申 8월	효종, 대왕대비, 영조, 왕비 가상 존호		
16	1744, 英祖20 甲子 1월	왕세자 관례 年紀. 세자빈 탄강, 책봉 연월일	8741, 8739	
17	1744, 英祖20 甲子 10월	영조 기로소에 듦		
18	1747, 英祖23 丁卯 3월	대왕대비 周甲 가상존호	8746, 8745-1	
19	1748, 英祖24 戊辰 월	숙종 睟容, 영조 御容 봉안	8776	
20	1751, 英祖27 辛未 1월	대왕대비 母臨 50년 가상 존호	8763	
21	1752, 英祖28 壬申 월	대왕대비, 영조, 왕비 가상 존호	8771, 8775	
22	1753, 英祖29 癸酉 월	육상궁 시호, 원호. 원손 탄강 연월일	8765, 8773	
23	1754, 英祖30 甲戌 2월	인경, 인현왕후, 대왕대비 가상 존호	8648	
24	1755, 英祖31 乙亥 6월	저경궁 시호, 원호	8762	
25	1756, 英祖32 丙子 1월	대왕대비, 육상궁, 영조, 왕비 가상 존호	8758	종부시
26	1757, 英祖33 丁丑 9월	인원, 정성왕후 휘·시·릉·호	8761	종부시
27	1758, 英祖34 戊寅 3월	소혜왕후 탄강일. 예종御字. 안순, 정현, 인성왕후	8760	종부시
28	1759, 英祖35 己卯 9월	왕비 탄강, 책봉 연월일 왕세손 책봉 연기	8740	종부시
29	1760, 英祖36 庚辰 4월	자손보 중교보간	8627	
30	1764, 英祖40 甲申 2월	왕세손의 종통을 정함. 법례를 추가하지 말게함		설 청
31	1771, 英祖47 辛卯 11월	先司空公을 전주 조경묘에 妥享한 것.	8635(8650)	설 청
32	1772, 英祖48 壬辰 8월	육상궁 가상 시호	8729	설 청
33	1772, 英祖48 壬辰 11월	명성왕후, 영조, 정성왕후, 왕비 가상 존호		설 청
34	1776, 英祖52 丙申 2월	인경, 인현, 인원왕후, 저경, 육상궁 등 가상 존호		종부시
35	1777, 正祖 1 丁酉 3월	영조 사후 그 묘호 등. 왕비를 왕대비로 진호		종부시
36	1779, 正祖 3 己亥 12월	영조 수용 봉안. 정성왕후, 왕대비 가상존호	8625, 8732	종부시
	1782, 正祖 6 壬寅 9월	聖嗣誕降 建號元子		특교설청

총번	일 시	교 정 내 용	규장각 No.	비 고
	1783, 正祖 7 癸卯 월	원자를 기재. 왕의 서문. 범례 개찬, 총서 체계,		특교설청
37	1784, 正祖 8 甲辰 8월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	8640, 8661	종부시
38	1784, 正祖 8 甲辰 9월	영조, 정성왕후, 경모궁 추상, 왕대비, 혜경궁가상		종부시
39	1786, 正祖10 丙午 8월	문효세자 시호, 廟號, 墓號		종부시
40	1787, 正祖11 丁未 1월	왕대비 가상 존호		종부시
41	1789, 正祖13 己酉 10월	현륭원 개호, 천봉 지명 연월일		종부시
42	1790, 正祖14 庚戌 10월	왕원자 탄강 연월일		종부시
43	1795, 正祖19 乙卯 1월	왕대비 가상. 경모궁 추상. 혜경궁 가상 존호	8633, 8695	종부시
44	1801, 純祖 1 辛酉 1월	정조 사후 그 묘호 등. 왕대비를 대왕대비로 진호	8606	
45	1802, 純祖 2 壬戌 10월	왕비 탄강, 책봉 연월일. 정조 수용 이봉 전명	8664-1	
46	1804, 純祖 4 甲子 2월	대왕대비 가상 존호	8621	
47	1805, 純祖 5 乙丑 윤6월	대왕대비 周甲 가상존호. 정순왕후 휘·시·릉호	8619	
48	1809, 純祖 9 己巳 11월	왕원자 탄강 연월일	8620	
49	1812, 純祖12 壬申 7월	왕세자 책봉 연기	8618	
50	1816, 純祖16 丙子 3월	헌경혜빈 시호, 원호		
51	1817, 純祖17 丁丑 3월	왕세자 입학 연기	8626	
52	1819, 純祖19 己卯 11월	왕세자 관례 연기. 세자빈 탄강 책봉 연월일		
53	1821, 純祖21 辛巳 10월	건릉 천봉. 효의왕후 휘·시·릉호		
54	1823, 純祖23 癸未 3월	현목수빈 시호, 원호	8622	
55	1827, 純祖27 丁亥 11월	순조, 왕비 상존호. 왕원손 탄강 연월일	8596	
56	1830, 純祖30 庚寅 8월	효명세자 諡·廟·墓號	8609	
57	1830, 純祖30 庚寅 8월	왕세손 책봉 연기. 순조 어진 봉안 전명		
58	1835, 憲宗 1 乙未 5월	순조 사후 그 묘호 등. 익종 묘·시·릉호	8646, 8696	종부시
59	1837, 憲宗 3 丁酉 3월	대왕대비 가상존호. 왕대비 상존호		종부시
60	1841, 憲宗 7 辛丑 3월	대왕대비 가상존호		종부시
61	1843, 憲宗 9 癸卯 12월	효현왕후 시·릉호	8612	종부시
62	1844, 憲宗10 甲辰 11월	왕비 탄강 책봉 연월일		종부시
63	1846, 憲宗12 丙午 8월	수릉 천봉. 순조, 익종 수용 이봉 전명		종부시
64	1848, 憲宗14 戊申 3월	순조, 익종 추상. 대왕대비, 왕대비 가상. 삼조보감	8653, 8631	종부시
65	1850, 哲宗 1 庚戌 3월	헌종 사후 그 묘호 등. 왕비를 왕대비로 진호	8632	종부시
66	1851, 哲宗 2 辛亥 10월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가상 존호		종부시
67	1852, 哲宗 3 壬子 3월	대왕대비 가상 존호	8636, 8610	종부시
68	1853, 哲宗 4 癸丑 2월	순조 추상, 대왕대비 가상 존호		종부시
69	1853, 哲宗 4 癸丑 10월	익종, 헌종, 효현왕후 추상. 왕대비, 대비 가상	8639	종부시
70	1856, 哲宗 7 丙辰 10월	장헌세자, 헌경혜빈 추상존호. 수릉, 휘경원 천봉	8611	종부시
71	1858, 哲宗 9 戊午 1월	순조, 순원왕후 추상존호	8628	종부시
72	1858, 哲宗 9 戊午 10월	순조 수용 영희전으로 이봉		종부시
73	1859, 哲宗10 己未 1월	왕원자 탄강 연월일	8634	종부시
74	1859, 哲宗10 己未 10월	대왕대비, 왕대비 가상 존호		종부시
75	1861, 哲宗12 辛酉 1월	순조, 순원왕후 추상존호		종부시
76	1862, 哲宗13 壬戌 1월	순조, 순원왕후 추상존호. 철종 어진 봉안 전명		종부시
77	1863, 哲宗14 癸亥 5월	휘경원 천봉 지명 연월일	8607	종부시
78	1863, 哲宗14 癸亥 6월	철종, 왕비 상존호	8644	종부시

총번	일　　시	교　정　내　용	규장각 No.	비 고
79	1864, 高宗 1 甲子 5월	철종 사후 그 묘호 등. 작년 11월 존호 내용	8645	
80	1872, 高宗 9 壬申 2월	고종 3년부터 9년까지의 추상, 가상 내용 종합		
81	1873, 高宗10 癸酉 4월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 가상. 고종, 왕비 상존호		
82	1874, 高宗11 甲戌 5월	왕원자 탄강 연월일		
83	1875, 高宗12 乙亥 2월	왕세자 책봉 연기		
84	1875, 高宗12 乙亥 12월	文祖 추상, 대왕대비 가상 존호		
85	1877, 高宗14 丁丑 1월	문조 추상, 대왕대비 가상 존호		
86	1878, 高宗15 戊寅 1월	대왕대비 가상 존호		
87	1878, 高宗15 戊寅 10월	哲仁왕후 휘・시・릉호		
88	1879, 高宗16 己卯 1월	순조, 순원, 문조, 추상존호. 대왕대비 가상 존호		
89	1882, 高宗19 壬午 2월	왕세자 입학 연기		
90	1882, 高宗19 壬午 3월	왕세자 관례 연기. 세자빈 탄강 책봉 연월일		
91	1883, 高宗20 癸未 1월	문조 추상, 대왕대비 가상 존호		
92	1886, 高宗23 丙戌 1월	대왕대비 가상 존호		
93	1887, 高宗24 丁亥 1월	문조 추상, 대왕대비 가상 존호		
94	1888, 高宗25 戊子 1월	대왕대비 가상 존호		
95	1888, 高宗25 戊子 3월	대왕대비, 왕대비, 고종, 왕비 가상 존호		
96	1890, 高宗27 庚寅 1월	영조 추상 묘・시・존호. 정성, 정순왕후 추상존호		
97	1890, 高宗27 庚寅 1월	왕대비 가상 존호		
98	1890, 高宗27 庚寅 2월	대왕대비, 왕대비, 고종, 왕비 가상 존호		
99	1890, 高宗27 庚寅 3월	숙종, 인경, 인현, 인원왕후 추상 존호		
100	1890, 高宗27 庚寅 9월	神貞翼皇后 휘・시・릉호		
101	1890, 高宗27 庚寅 12월	文祖翼皇帝, 신정익황후 추상존호		
102	1892, 高宗29 壬辰 4월	선조, 의인, 인목왕후 추상 존호		
103	1892, 高宗29 壬辰 7월	문조, 신정왕후 추상존호 왕대비, 고종, 왕비 가상,		
104	1900, 光武 4 庚子 5월	고종 34년의 칭제건원부터 광무 4년까지의 追上	8738	

* 이 표는 선원계보기략의 총서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 총번이 없는 것은 선원계보기략 이전 단계의 선원록 간행과 내용을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개간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 교정 내용란은 대표적인 항목만을 뽑아 축약한 것이다.